

## 유 존 지 역 평 가 참 여 인 원 수

1. 유존지역평가 정의

-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존조치를 평가하는 것

2. 유존지역평가 비용

① 관계전문가(매장유산 전문가) 자문료 (외부 기관의 관계전문가일 경우만 적용)

- 현장출장비(실비) + (현지조사 수당×인×일) +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
-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
-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,000원으로 함
-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,000원으로 함

② 유존지역평가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\*

(단위 : 일)

조사단계별	유존지역 평가			
	단장	책임조사원		조사원 (또는 준조사원)
		현장조사 포함	현장조사 미포함**	
사전조사	0.1인	0.1인	0.1인	0.1인
현장조사	-	0.4인	-	0.3인
정리 분석	-	0.1인	0.1인	0.2인
보고서 작성	0.1인	0.1인	0.1인	0.4인

\*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,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

\*\* 외부 기관 관계전문가만 현장 조사 시행 시 적용

가. 지표조사와 유존지역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지표조사 기준인력수에 위 기준인력수의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한다.

○ 1일 유존지역 평가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

항목	금액	세부산출내역	비고
1. 직접인건비	516,877	-단장 0.2×365,209=73,041원 -책임조사원 0.7×281,642=197,149원 -조사원 1×246,686=246,686원	-조사인력별 인건비 단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
2. 직접경비	600,000	-전문가 자문료(현지 및 결과작성 수당) -여비, 회의자료, 보고서 간행비 등 (실비)	-대가기준 직접경비 비목별 산출방법 준용
3. 제경비	568,564	1의 100~110%	-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직접인건비의 100~110% 이내 계상
4. 학술료	325,632	1+3의 20~30%	-대가기준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한 금액의 20~30% 이내 계상
5. 소계	2,011,073		
6. 부가가치세	201,107	5의 10%	
7. 총계	2,212,180		